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0호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직급)·인원·기간·직무내용

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임용 기간	직무내용
수지구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 개설, 의료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예방접종사업■ 응급의료·재난대응 관련 업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지역보건법에 관한 사항■ 진료 및 일반민원 접수·발급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소 관련 사무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자격기준

▶ 공통요건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연 령 : 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이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자격요건 : 다음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면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u>의사 면허 소지자</u>
경력요건	[(관련학과) 학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p>	

▶ 자격 요건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시험방법

▶ 1차 시험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함

▶ 2차 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능력요건 등 적격성 심사)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실시
- ※ 심사대상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5. 9.(금) ~ 5. 15.(목) / 5일간(공휴일·주말 제외)
- 접수처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031-6193-3602)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16:30 등)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장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시청 5층)
 - ※ 용인시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5. 5. 21.(수) 전·후 (용인시 홈페이지)	2025. 5. 23.(금)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용인시 홈페이지)	2025. 5. 30.(금)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용인시 홈페이지 (www.yongi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 1부(붙임1/필수)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1만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 면제

② 이력서 1부(붙임2/필수)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3/필수)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경력 및 직무성과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4/필수)

- 작성 시 정책(사업)목표, 단계별 과제, 세부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붙임5/필수)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붙임7/필수)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붙임8/필수)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필수)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증명서 모두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⑨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민간경력 기준으로 응시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지참)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은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제출

⑫ 학위·연구논문 사본, 연구실적 목록, 기타 실적관련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⑬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
-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3. 기타사항

○ 보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연봉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130% 범위에서 책정함이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4호 (4급 상당)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8,106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 **(재공고)**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재공고합니다.
-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발급일이 6개월이 경과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균점수를 공개하며,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 (031-6193-3602)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처인구보건소 보건기획팀 (031-6193-4940)

[별지 제1호 서식]

개방형직위(수지구보건소장)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직급
용인시청	수지구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호)
4. 주요업무내용		5. 비중
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0%
나.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10%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라.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 개설, 의료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10%
마. 국가예방접종 사업		10%
바. 응급의료, 재난대응 관련 업무		10%
사. 지역보건법에 관한 사항		10%
아. 정신보건사업		10%
자. 진료 및 일반민원 접수·발급에 관한 사항		5%
차. 기타 보건소 관련 사무		5%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나. 경력요건	[일반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요건]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관련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분야

